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7-78호
2017. 10. 25.(수)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7-823호) ·····1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감사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82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사항이나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나. 법령과 중복 기재로 규정실익이 없거나,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시장의 기준 등을 정한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

다.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앴는바,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라.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26조).

마. 상인회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규제 조항을 삭제함(안 제30조).

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일부내용을 삭제함(안 제31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1.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전화 : 042-608-6921, FAX : 042-608-3831, E-mail : tajan10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담당자 박재완 (전화: 042-608-69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시행규칙에 의하여”를 “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상인″이라 함은”을 ““상인”이란”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점포″라 함은”을 ““점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시시장″이라 함은”을 ““임시시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상점가″라 함은”을 ““상점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편의시설″이라 함은”을 ““편의시설”이란”으로,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을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및 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상인회″라 함은”을 ““상인회”란”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고객지원센터 및 비가림시설”을 “고객지원센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가목 내지 마목”을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신청에 의하여”를 “신고에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를 “다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를 “제23조”로,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예의 범위 안”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예산의 범위 안”를 “경우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3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한다.

제39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영 제35조의 규정”을 “영 제3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법 시행규칙에 따라**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상인"이란** ---------- ----------**상권활성화구역** ---------- ---------- ---------- ---------- ---. ---------- ---------- ---------- ---------- ---------- ---------- ----------.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	2. **"점포"란** ---------- ---------- ----------

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
3. "임시시장"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	3. "임시시장"이란---------- ----. --
4. "상점가"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	4. "상점가"란---------- ----------.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5. ----------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시·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란**----------상권활성화구역----------.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및 콜 센터** ----------.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상인회"란** ----------**상권활성화구역**----------.
8. "시장관리자"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	8. ----------**란**----------

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①(생 략)	**제3조(시장의 구역)**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범위**----------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및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고객지원센터** ---------- ---------- ----------**따라**-------- ----------.
③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	③ ---------- ---------- ---------- ---------- ---------- ---------- ---------- ---------- ---------- ----------**범위**---------

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범위**----------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삭 제>**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	

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생 략)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② ----------따른----------.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 시설 등 상인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 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생 략)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3. (생 략) ② (생 략)	**시설과 부지)** ① (현행과 같음)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생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른**----------.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따라** ----------.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감면)** ----------**따른** ----------.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생략)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 ----------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 **다만,**----------.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운영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제2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삭 제>**

2. 상인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의 범위----------. ③·④ (현행과 같음) ⑤----------따른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삭 제>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해당----------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범위----------.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따른----------.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따라---------- 경우 예산의 범위 ----------.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 등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삭 제>

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생략)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현행과 같음)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② ----------따라----------따른----------.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① (생 략) 1.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8조와 같다.	제37조의2(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37조의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구에서 개	제37조의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 ---------- ---------- ----------**에도**---------- ---------- ----------.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 ---------- ----------**따른** ---------- ----------.
제40조(과태료) ①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 **영 제35조**---------- ----------. ②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